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정규과정이나 학교행사 중 등에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상합니다. (국내·국외)

갓켄사이부대배상책임보험 안내 "Futaibaiseki"

가입 대상자

학교교육법 등이 규정하는 대학 등 중,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회원인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재적한 학생으로 갓켄사이(*1)에가입 중인 학생에 한합니다.

(*1) 갓켄사이 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약칭입니다.

보험 기간

- 4월 입학생이신 분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 9월 입학생이신 분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 10월 입학생이신 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해 9월 30일 오후 12시까지

(주의) 1년간 가입한 경우입니다. 다년 가입의 경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의 각 종료일까지입니다.

(주의) 보험 개시일 전날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분의 임의가입 (학생이 가입을 결정)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지불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각 종료일까지입니다. 전원가입의 내용은 P4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업 중에 실험 장비의 센서를 망가뜨렸다. → A·C코스

통학 중에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 A·C코스

인턴 파견회사에서 근무 중에 상품을 망가뜨렸다. → A·B·C코스

학교(*2)의 지시에 따라 가입 코스를 선택하세요!

갓켄사이 캐릭터 사이짱

병원의 실습중에 지급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켜 버렸다. → C코스

A코스 ("Gakkenbai")

수업이나 통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수업 중, 학교행사 중, 그에 필요한 이동 중 등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주의) A 코스에 가입하신 경우 B 코스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B코스 ("Intern-bai")

인턴 및 교육실습 등에 한정!

인턴 중, 복지간호 체험활동 중, 교육실습 중 등의 특정 활동 및 그에 필요한 이동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주의) 의료 관련 실습,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주의) 학교가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3)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C코스 ("Igakubai")

의료 관련 실습 중에도 안심!

의료 관련 학부의 실습 중, 학교행사 중 및 그에 필요한 이동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합니다!

(주의) C 코스에 가입하신 경우 A 코스 및 B 코스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akkenbai(A 코스): 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 Intern-bai(B 코스): 인턴쉽·교직자격활동등 배상책임보험 / Igakubai(C 코스): 의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속 학교(*2)에 따라 취급 코스와 가입에 따른 수속이 다르니 학교(*2)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2) 학교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학 등 중,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회원인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보상내용

일본 국내외에서 학생 (피보험자) 이 정규수업, 학교행사, 과외활동 (*3) 또는 그 왕복중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본 보험에서 「과외활동」이란 학교의 규칙에 의거한 소정의 수속에 의해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그 외 클럽활동등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정규수업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날의 클럽 활동 (학교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 등은 제외합니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중에 행한 행위는 대상이 되는 활동에 포함합니다.

1. 대상 활동범위

보상내용	코스	A코스 (*1) ("Gakkenbai")	B코스 (*2) ("Intern-bai")	C코스 (*3) ("Igakubai")
인턴,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자원봉사활동 및 그 왕복 (*4)		○	○	○
상기 이외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및 그 왕복		○	×	○
의료 관련 실습 (*5) 및 그 왕복		×	×	○

- (*1)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포함합니다.
- (*2) 의료 관련 실습 및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 (*3) 의료 관련 실습을 포함합니다.
- (*4) 학교가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의료 관련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한 실습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 한도액) · 보험료

		A코스	B코스	C코스
지급한도액 (*1)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합하여 한 사고당 1 억엔 한도 (면책금액 (*2) 0엔)		
피보험자 1명당 1년간 최대보험료	1년간	340엔	210엔	500엔
	2년간	680엔	420엔	1,000엔
	3년간	1,020엔	630엔	1,500엔
	4년간	1,360엔	840엔	2,000엔
	5년간	1,700엔	1,050엔	2,500엔
	6년간	2,040엔	1,260엔	3,000엔

- (*1) 피보험자 1인의 1년에 해당하는 지급 한도액입니다.
- (*2) 면책금액이란 지급할 보험금 계산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면책금액은 피보험자 자기부담이 됩니다.

(주의) 연도 도중에 가입하신 경우도 보험료분담금은 1년간 단위로 합니다.
 (주의) 보험기간 중 해약은 가능하지만, 해당년도의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약관 내용은 (공재)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보험기간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애 (장애로 기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한 것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 가. 상기 표의 '활동범위' 에 정하는 활동 (이하 '활동' 이라 함) 의 수행에 기인하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시설배상책임보험)
 - 나. 활동 결과에 기인해 그 활동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과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1페이지의*2) 의 성과물 (약제 포함, 이하 '생산물' 로 표기) 에 기인하는 사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2. 활동중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 (이하 [수탁물] 이라고 합니다.) 을 보험기간중에 멸실, 파손, 오손 혹은 분실, 또는도난 혹은 사취당함으로써 수탁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배상금이나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배상책임 승인 · 배상금액 결정에는 미리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보험약관 내용은 (공재)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공통**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②전쟁, 변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 ③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또는 높은 파도
 - ④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⑤배수, 배기에 기인한 배상책임
 - ⑥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유해한 특성 작용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손해. (방사능오염, 방사선장애를 포함) 단, 의학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생긴 원자핵반응, 원자핵 붕괴 · 분열로 인한 손해로 그 사용 · 저장 · 운반에 법령위반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⑦피보험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 의료행위 및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 보건사 · 조산사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 약품의 조제, 투여, 판매, 공급
 -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점골사, 건축사, 토지가옥조사원, 기술사, 측량사,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
 (주의) 단, C코스에서 의료관련 실습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및 C코스에서 약학교육 실무실습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기 가운데 「약품의 제조 · 투여 · 판매 · 공급」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⑧ 사이버 공격

- ①피해자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
- ②인수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의 정소비용
- ③타인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 · 행사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 · 확대의 방지를 위해, 인수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
- ④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수속을 하고,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 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응급처치, 호송 등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또는인수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기타 비용
- ⑤인수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맡을 경우에, 인수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른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금의 지급방법】
 상기 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한도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시기의 수탁물의 시가를 한도로 합니다.)
 상기 ②~⑤의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상 그 금액이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②의 정소비용에 대해서는 ①손해배상금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 ①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시설배상 책임보험

- ①자동차,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항공기, 승강기 또는 시설 밖의 배 · 차량 (원동력이 오직 인력인 것은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 ②오염물질의 배출 · 유출 · 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비용 (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③석면,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제공한생산물로 기인한 손해
- ②생산물 자체의 손괴 또는 사용불능에 관한 배상책임
- ③일본국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본국외의 재판소에 제소된 손해배상청구
- ④오염물질의 배출 · 유출 · 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비용 (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⑤석면,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①자연발화 또는 자연폭발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 ②수탁자가 기탁자에게 양도한 후 발견된 사고

- ③자전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차량, 동물, 악플, 지폐, 유가증권, 인지, 우표, 증서, 장부, 귀금속, 보석, 미술품, 골동품, 훈장, 기장, 원고본, 설계서, 모형 기타 이러한류의 수탁 물의 손괴, 도난, 분실, 사취
- ④건물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또는 싸라기눈의 침입되는

- 들이침으로 입은 손해
- ⑤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또는 가사용기구에 서 증기·물의 누출·일출 또는 스프링클러로부터 내용물 누출·일출로 인한 손해
- ⑥수탁물 사용 불능에 기인한 손해 등

5. 기타

• 가입 후의 유의사항

가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의 담당장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 로 통지해 주십시오.

- 학부, 학과 등을 변경하는 경우·보험기간 중 통산 1년이상 휴학할 때·가입 코스 변경 시·퇴학하는 경우

• 타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본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 (이하 [타 보험계약 등] 이라 합니다.) 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계약 등과는 관계없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액에서 이미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차감한잔액에 대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보상 내용이 동일한 보험계약 (특약 및 인수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중복되면 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어떤 계약으로부터도 보상이 지급되지만, 어느 한쪽의 계약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내용의 차이 및 지급 한도액을 확인하신 후, 계약의 필요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 사고 발생 시 수속

보험사고 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전화로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에 다음 내용을 연락해 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학교명·사고 발생일, 시각·사고 발생 장소·피해자의 성명, 연령·사고 원인·피해 (상해, 손괴등) 의 정도또한, 학교의 담당장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 에 사고 내용을 통지하고 인수보험회사에 연락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연락이 늦으면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협의조정교섭 서비스에 대해

협의조정 (示談) 교섭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과 해결교섭을 행하는 [협의조정 교섭 서비스] 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수보험회사의 담당부서로부터 조언을 토대로 가입자 (피보험자) 자신 이 피해자 쪽과의 협의조정 교섭을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배상책임을 승인 또는 배상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선취 특권에 대해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보험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인수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 (비용보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합니다) 에 대해 선취 특권을 가집니다. (보험법 제22 조 제1항) . [선취 특권] 이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서 다른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 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인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제22 조 제2항) .

이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청구 받은 인수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에 한하므로 이해 바랍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으로서 변제를 행한 경우
-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승낙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본 「안내」 는 갯켄사이부대 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 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재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약관 등에 따릅니다만, 불명료한 점은 학교의 담당장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 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가입 후에는 「갯켄사이부대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안내서」 를 읽어주십시오. 신청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본 「안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갯켄사이부대배상책임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재교육지원협회와 이하의 보험회사 (예정) 간에 체결하는 공동보험계약이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가 다른 인수보험회사의 대리·대행을 합니다. 각 인수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에 결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별로 보험계약 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인수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재교육지원협회에 확인 바랍니다.

아이오이넷이동화 손포재팬 도쿄해상일동 (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 갯켄사이부대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 시설소유 (관리) 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수탁자 특별약관,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 특약 조항 등에 근거하는 시설배상 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애칭입니다.

<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재교육지원협회 학생지원부 학생보험과

우편번호 153-8503 도쿄도 메구루구 고마바 4-5-29 TEL : 03-5454-5275 URL : <http://www.jees.or.jp/>

자세한 내용은 상기 협회 HP 에 게재된 ‘갯켄사이 부대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

JEES Gakkensai

검색

